

한국씨티은행B2B전자결제서비스이용약관

이 한국씨티은행B2B전자결제서비스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이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인 「한국씨티은행 B2B 전자결제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제공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약관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은행과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MP(Marketplace) : 온라인 시장으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장(e-Marketplace)을 운영하는 업체 또는 시장을 말합니다.
2. 물건 : 상거래 대상이 되는 모든 유무형의 재화 및 용역을 말합니다.
3. 구매기업 : MP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업체로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MP 자체를 말합니다.
4. 판매기업 : MP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매기업에 물건을 판매하는 MP 자체를 말합니다.
5. 기업 : 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을 말합니다.
6. 일반거래 : 구매기업이 MP를 통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건의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은행의 결제서비스를 말합니다.
7. 매매보호거래 : MP를 통한 판매기업과 구매기업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대금결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8. 결제예정일 : 구매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구매기업이 지급지시 또는 지급위탁 등의 행위를 취하여야 할 날을 말합니다.
9. 인수통지예정일 : 구매기업이 은행에 구매물건인수통지를 하기로 예정한 날을 말합니다.
10. 지급지시 : 일반거래에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도록 은행에 지시하는 행위 또는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가상계좌, 은행계좌 또는 지정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1. 지급위탁 : 매매보호거래에서 은행이 구매기업의 구매물건인수통지 시 구매대금을 판매기업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구매기업이 은행에 구매자금 상당액을 가상계좌 또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또는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가상계좌 또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2. 위탁자금 : 은행이 구매기업의 지급위탁 지시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은행계좌에 입금한 자금금원 및 구매기업이 가상계좌 또는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한 자금금원을 말합니다.
13. 구매물건인수통지 :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배송 받은 물건을 검수한 후, 위탁자금을 인출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최종 지급하도록 은행에 지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4. 인터넷사이트 : 은행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www.citibank.co.kr)를 말합니다.
15. 재접수 : 은행이 MP로부터 통보받아 인터넷사이트(www.citibank.co.kr)에 게시한 매매계약의 내역과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간 실제 매매계약의 내역이 상호 다른 경우, MP가 스스로 혹은 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의 의뢰를 받아 은행에 기 통보한 매매계약의 내역을 실제 매매계약의 내역으로 변경하여 은행에 통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6. 계약변경 : MP가 기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의 의뢰를 받아 은행에 기 통보한 매매계약의 내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7. 계약취소 : MP가 기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의 의뢰를 받아 은행에 기 통보한 매매계약의 내역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구매기업의 지급지시(위탁)이후에는 계약취소가 불가능합니다.
18. 지급위탁취소 : 구매기업이 은행에 행한 지급위탁을 기업이 MP를 통하여 취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9. 가상계좌 : 은행이 거래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일회용 계좌를 말합니다.
20. 지정계좌 : 판매기업이 지정한 모든 금융기관 계좌를 말합니다.
21. 은행계좌 : 은행이 예금주로 되어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22. 디지털 세금계산서 : 은행이 판매기업을 대행하여 구매기업에게 발행, 교부하는 전자적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23. 거래지시 : 지급지시, 지급위탁, 구매물건인수통지, 계약변경 승인 등 기업이 은행에 특정 의사표시를 통지하거나 개별적인 처리를 의뢰하는 내용의 것을 말합니다.
24. 결제수수료 : 판매기업 및 구매기업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25. 중개수수료 : 판매기업 및 구매기업이 MP의 매매계약 중개에 대한 대가로 MP에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제 3 조 (서비스 이용)

- ① 기업은 컴퓨터, 전화기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산장애, 통신장애 등 전자적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 ② 기업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거한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거래지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에 의한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의 원클릭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주)한국씨티은행

CR-A-583 (2017. 10) 심의번호 : 1708-01-251(2017.8.22.)

제 4 조 (이용신청 및 승낙)

- ① 기업은 우선 은행의 기업인터넷뱅킹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기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인터넷뱅킹 신청과 별도로 은행이 정한 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 ③ 기업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출금계좌, 입금계좌,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주소 등 신청서에서 정한 항목 중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업무처리 기본절차)

- ① 일반거래는 다음 각호와 같은 절차 및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은행은 MP로부터 매매계약의 내역과 중개수수료 금액을 통보받아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2. 기업은 인터넷사이트(www.citibank.co.kr)에 게시된 매매계약의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매매계약의 내역과 다른 경우에는 MP로 하여금 재접수 하도록 조치합니다.
 3. 구매기업은 결제예정일 또는 그 이전에 은행에 지급지시를 합니다.
 4. 은행은 구매기업의 지급지시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거나 또는 판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매매보호거래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절차에 이어서 다음 각호와 같은 절차 및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구매기업은 결제예정일 또는 그 이전에 은행에 지급위탁을 하거나 당해 구매대금을 가상계좌 또는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합니다.
 2. 구매기업은 인수통지예정일 또는 그 이전에 판매기업으로부터 배송 받은 물건을 검수한 후 은행에 구매물건인수 통지를 합니다.
 3. 은행은 가상계좌나 은행계좌에서 위탁자금을 인출하여 판매기업의 지정계좌에 입금합니다.

제 6 조 (변경처리절차)

- ① 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이 계약변경, 계약취소, 지급위탁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MP에 의뢰한 후 MP의 승인 및 MP의 은행에 대한 통보의 절차 및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② 매매보호거래에서 구매기업의 지급위탁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이 가상계좌나 은행계좌에 입금된 이후에는, 계약변경, 지급위탁취소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 및 순서에 추가하여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모두 이를 승인하여야 그 절차가 완료됩니다.
- ③ 매매보호거래에서 지급위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약취소의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급위탁취소의 절차까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제 7 조 (변경처리의 제한 등)

- ① 일반거래에서 구매기업의 지급지시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이 판매기업의 지정계좌에 입금된 이후에는 재접수, 계약변경 및 계약취소를 행할 수 없습니다.
- ② 매매보호거래에서 지급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접수 및 계약취소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 대신에 계약변경 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③ 매매보호거래에서 지급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탁자금의 금액을 증액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계약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④ 기업은 MP에 대한 변경의뢰, MP의 승인 등 MP가 제6조 제1항에 따라 은행에 통보하기 이전의 절차에 대하여는 당해 MP와 별도로 약정하여야 하며, 은행은 이와 관련하여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결제수단 등)

- ① 지급지시 또는 지급위탁에 수반되어야 하는 구매기업의 구매대금 결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방법 중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가상계좌, 은행계좌 또는 지정계좌로의 현금입금
 2. 가상계좌, 은행계좌 또는 지정계좌로의 자기앞수표 입금
 3. 계좌 이체 지시
- ② 구매기업은 제1항의 구매대금 결제를 계좌이체지시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구매기업의 결제계좌에서 별도의 청구서 없이 당해 구매대금을 출금한 후 동 금액을 가상계좌, 은행계좌, 또는 지정계좌에 입금합니다.
- ③ 구매기업이 제1항의 구매대금 결제를 타점권 자기앞수표 입금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타점권의 추심결제 전이라도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 절차를 지급지시 및 지급위탁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구매대금이 판매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후에도 은행은 당해 타점권이 추심 결제되어 자금화 될 때까지 판매기업의 해당 금액 출금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④ 구매기업이 가상계좌나 은행계좌에 입금한 타점권 자기앞수표가 부도 반환되는 경우에는 구매기업이 기 행한 지급지시 또는 지급위탁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도 반환된 자기앞수표 실물의 처리절차는 은행의 자기앞수표 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 구매기업에 반환합니다.
- ⑤ 은행은 제4항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주문번호 등 관리)

- ① 은행은 구매기업의 지급지시 및 지급위탁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문번호단위로 관리하며, 동일한 주문번호에 결제예정일이 수개인 경우에는 결제예정일 단위로 관리합니다.
- ② 구매기업이 2개 이상의 주문번호 및 결제예정일 관리단위에 대한 제8조 제1항의 구매대금 결제를 1회의 계좌이체지시

방법으로 하는 경우, 계좌이체 가능 금액이 모든 주문번호 및 결제예정일 관리단위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구매기업의 선택에 따라 인터넷사이트(www.citibank.co.kr)에 게시된 주문번호 및 결제예정일 관리단위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 ③ 구매기업이 2개 이상의 주문번호 및 결제예정일 관리단위에 대한 제8조 제1항의 구매대금 결제를 1회의 가상계좌, 은행계좌, 또는 지정계좌에 입금 방법으로 하는 경우, 입금 금액이 모든 관리단위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장래에 도래하는 결제예정일 순서로 충당됩니다.
- ④ 은행은 일반거래에서 제8조 제1항의 구매대금 결제가 주문번호 및 결제예정일 관리단위별로 일부 금액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제5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합니다.
- ⑤ 은행은 매매보호거래에서 제8조 제1항의 구매대금 결제가 주문번호 및 결제 예정일 관리단위별로 전액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제5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 10 조 (결제예정일기간 초과 시 처리 및 인수통지에정일)

- ① 일반거래에서 결제예정일로 지정된 날까지 지급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매매보호거래에서 결제예정일로 지정된 날까지 지급위탁과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 가상계좌 나 은행계좌 입금이 당해 구매대금 전액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업은 결제예정일을 장래의 날로 변경하는 계약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은행은 이러한 계약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당해 건에 대하여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 ③ 매매보호거래에서 구매기업이 인수통지에정일로 지정된 날까지 구매물건인수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인수통지 예정일을 장래의 날로 변경하는 계약변경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은행은 이러한 계약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인수자금의 인출을 보류하고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11 조 (위탁자금 처리)

- ① 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위탁자금을 인출하여 판매기업의 지정계좌에 입금합니다.
 - 1. 구매기업이 인수통지에정일까지 구매물건인수통지를 하는 경우
 - 2. 구매기업이 동의하는 경우
 - 3.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원인관계(매매계약관계)상 위탁자금을 판매기업에 지급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위탁자금 중 해당 금액을 구매기업에 반환합니다.
 - 1. 계약취소 또는 지급위탁취소 절차가 완료된 경우
 - 2. 계약변경에 의하여 위탁자금의 금액이 감액된 경우
 - 3. 제8조 제1항의 구매대금 결제가 일부에 대하여만 이루어짐으로써 지급위탁에 따른 절차가 중단된 경우
 - 4. 판매기업이 동의하는 경우
 - 5.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원인관계(매매계약관계)상 위탁자금을 구매기업에 반환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구매기업이 착오로 지급위탁 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제 12 조 (디지털 세금계산서)

- ① 디지털 세금계산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됩니다.
 - 1. 구매기업이 발행의뢰를 하고 판매기업이 발행승인 하는 경우
 - 2. 판매기업이 발행승인을 하고 구매기업이 발행확인 하는 경우
- ② 구매기업은 필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발행된 디지털 세금계산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출력된 세금계산서의 용지 상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번호가 은행으로 부기되어 있어야 관련법규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 ③ 은행은 발행한 디지털 세금계산서의 원본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각종 전산매체에 5년간 보관하며, 기업 또는 세무당국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 및 출력케 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된 디지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 (지정 이메일 통보 및 관련정보 게시 등)

- ① 은행은 기업이 서비스 절차진행 상황에 대하여 이메일 통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를 수행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기업은 수신 받을 이메일 주소를 사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은 MP, 판매기업 및 구매기업이 개별 당사자에 관련되는 서비스 절차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 내용을 인터넷사이트(www.citibank.co.kr)에 게시하여야 하며, 기업은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④ 기업은 거래지시와 은행의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은행은 거래지시와 달리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거래지시 대로 정정하여야 하며, 그 정정사실을 당해 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결제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 ① 결제수수료는 은행과 기업이 사전에 정한 바에 따르며, 은행이 결제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에 통지를 하거나 또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1개월전에 게시하여 1개월 동안 알리기로 합니다.
 - 1. 변경사실 및 구체적인 내용을 인터넷사이트(www.citibank.co.kr)에 게시
 - 2. 변경사실만 인터넷사이트(www.citibank.co.kr)에 게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MP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② 은행은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금액을 주문번호 관리단위별로 인터넷사이트(www.citibank.co.kr)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은 제5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3호의 계좌 입금 시에 결제수수료와 중개수수료를 계약에 따라 판매기업 또는 구매기업의 계좌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정보제공 등의)

은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MP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은행의 통지에 동의하며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매매계약 내용 접수, 재접수, 계약변경, 계약취소, 지급위탁취소 등 MP가 서비스의 원활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은행에 통보하는 사항에 대한 은행의 수신응답
2. 가상계좌, 은행계좌 번호
3. 지급지시, 지급위탁 및 구매물건승인통지 사실
4. 재접수, 계약변경, 계약취소, 지급위탁취소에 대한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의 승인 통지 사실
5. 기타 서비스의 원활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6 조 (신고사항의 변경)

- ① 기업은 제4조 제3항의 기재사항, 제13조 제2항의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은행에서 정한 전산상의 방법을 통하여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작업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 ① 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
 2.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된 때
- ② 은행은 제1항에 의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인터넷사이트(www.citibank.co.kr)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기업은 공인인증서 재발급,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이용계약의 해지)

- ① 기업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인터넷사이트(www.citibank.co.kr)를 통하여 은행에 해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기업은 은행이 MP로부터 통보받아 인터넷사이트(www.citibank.co.kr)에 게시한 매매계약건과 관련하여 이 약관에 따른 전자결제 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에야 제1항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면책)

- ① 은행은 MP로부터 통보받은 대로 인터넷사이트(www.citibank.co.kr)에 게시한 매매계약 등의 내용 (재접수, 계약변경, 계약취소, 지급위탁대금취소 등 일체의 경우를 말함)에 관하여는 그 진위를 보장하지 아니하며, 기업이 제5조 제1항 제2호의 확인 및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지시를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② 은행은 판매기업이 은행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확인한 지급위탁 사실을 신뢰하여 물건을 배송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③ 은행은 물건의 배송, 운송, 하자, 반품 등 원인관계(매매계약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④ 은행은 기업이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의 확인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⑤ 은행은 기업이 제4조 제3항의 기재사항 또는 제13조 제2항의 이메일 주소를 다르게 기재·등록하거나 제16조 제1항의 신고를 지체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⑥ 은행은 기업이 이 약관에서 정한 거래지시를 하는 데 필요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이하 “접근수단”이라 함)이 은행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이 약관에서 정한 절차와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처리한 경우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접근수단의 위조, 변조 및 기타의 사고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은행이 접근수단의 위조, 변조 및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⑦ 은행은 정전, 화재, 전산장애, 통신장애, 기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도 기업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은행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0 조 (사고장애키의 처리)

- ① 기업은 접근수단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은행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 (대여, 위탁, 양도의 제한)

기업은 접근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제 22 조 (약관변경 등)

- ① 이 약관에서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기업금융 온라인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 기타 관련 약관 및 규약에 따르며, 디지털 세 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규에 따릅니다.
- ②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인터넷사이트(www.citibank.co.kr)에 1개월간 게시 하여야 하며,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기업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기업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